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29 제출연월일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,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 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

제2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9662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4항제 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

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	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		
법률	법률		
제24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) ①	제24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		
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			
관리사가 될 수 없다.			
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	1. 피성년후견인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		
제25조의2(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	제25조의2(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		
리사) ① (생 략)	리사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			
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.			
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	1. 피성년후견인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